

# 01 자퇴신청방법

## 01 자퇴신청방법

## 02 등록금반환기준

# 자퇴 신청 방법

EDWARD 시스템 > 학사행정 > 학적 > 학적변동관리 > 학적변동신청 > 추가 > '자퇴' 선택 후 사유 입력

## 1. 자퇴 신청

- 가. EDWARD 시스템의 [학적변동신청] 메뉴에서 **자퇴 신청** 등록
- 나. 자퇴신청 등록 후 **자퇴신청서 인쇄**(1매, 학적변동신청 메뉴에서 출력 가능)
  - \* 등록금 납부자는 등록금 반환도 신청 바람



## 2. 자퇴 면담

- 가. 자퇴 시 소속 학과 **학과장과 면담 필요(지도교수 X)**
- 나. 자퇴신청 시 출력한 **자퇴 신청서**를 지참하여
- 다. 면담 방법(대면, 비대면) 일정 조율은 본인의 소속 학과 사무실 또는 학과장 연구실로 직접 문의 바람



## 3. 제출

- 가. 학과장 면담 후 **자퇴신청서를 단과대학 행정팀에 최종 제출 하여야 함**
  - 나. 단과대학에 자퇴신청서 제출 후 승인까지 통상 3~4일 가량 소요(휴일 제외)
- ※ EDWARD시스템에 자퇴 신청 등록 후 당월 내까지 자퇴신청서 미 제출 시 신청내역이 삭제 처리 되며 재 신청 필요함**

# 02 등록금반환기준

01. 자퇴신청방법

## 02 등록금반환기준

# 등록금반환기준

등록금 반환 사유 발생 기준일

- 1. 등록금 납부 후 재학 중 자퇴: 자퇴 신청일
- 2.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중 자퇴: 휴학 신청일

### 자퇴 신청 일자에 따른 등록금 반환(2026학년도 2학기 기준)

반환 금액	반환 사유 발생일	2026학년도 2학기 기준일
등록금 전액	입학일 또는 당해학기 개시일 전까지	2026. 8. 31.(월)까지
등록금의 5/6 반환	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	2026. 9. 1.(화) ~ 30.(수)
등록금의 2/3 반환	학기개시일에서 30일의 익일부터 60일까지	2026. 10. 1.(화) ~ 30.(금)
등록금의 1/2 반환	학기개시일에서 60일의 익일부터 90일까지	2026. 10. 31.(토) ~ 11. 29.(일)
등록금 소멸	학기개시일에서 90일의 익일부터	2026. 11. 30.(월) 이후



#### 등록금 반환 신청

- 1. EDWARD 시스템에서 자퇴 신청 시 팝업창에서 등록금 반환 신청이 가능함
- 2. 등록금 반환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, 자퇴 승인 이후 다음 메뉴에서 별도로 반환 신청하여야 함
- 3. 반환 신청 메뉴: EDWARD 시스템 > 학사행정 > 등록 > 분납 및 환불관리 > 등록금 반환신청
- 4. 등록금 반환은 자퇴 승인 이후 가능하며 승인일로부터 통상 1~2주 가량 소요

\* 등록금 반환 기준과 휴·복학시의 등록금 대체 기준은 상이함 유의